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1. 의결주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을 축소하며,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의 정기검사 면제(안 제7조제3호 신설)

나.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의 축소(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의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1)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1)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

2)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1. ~ 2009.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가스용품의 안전성 제고 차원 등)

- 규제 완화 1건(액화석유가스의 유통비용 절감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 의무의 이행 및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에 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

은 가스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검사”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 ·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 · 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용기(자동차연료용 ·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 · 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란의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란 중 “초과”를 “초과(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로, “이하”를 “이하(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이하)”로 한다.

별표 1의 비교란 제10호 중 “특정사용시설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특정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특정사용시설과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을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를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8호 중 “액화석유가스 수요자”를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  
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  
일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② · ③ (생 략)</p> <p>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법 제20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 사의 전부를 생략한다.</p> <p>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 은 제품</p> <p>2. ~ 7. (생 략)</p> <p>②제1항제2호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 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 략할 수 있다.</p>	<p><u>사업 허리를 받은 자</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11조에 따른 공 급자 의무의 이행 및 법 제23조에 따른 판 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p> <p>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 —————</p> <p>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 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 용품에 한정한다)</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p> <p>2.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제1항제2 호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 에 수입하는 가스용품</p>



현 행	개정안
<u>〈신 설〉</u>	<p>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p>
<u>〈신 설〉</u>	<p>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p>
	<p>⑤ _____</p> <p>_____ 제1항제 1호 및 제2항제1호 _____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_____ _____</p>
제16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p>제16조(보험의 종류 등) ①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p>
<p>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 ·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 · 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p>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가. 용기(자동차연료용 · 용기내장형가스난방 기용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 · 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
<u>〈신 설〉</u>	<u>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 략)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u>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u>⑤-----</u>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 <u>-----</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연락처	(02)2110-5446